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신규조문대비표

2021. 3. 29. 개정 판 (시행 2021. 3. 1.) → 2022. 1. 17. 개정 판 (시행 2022. 2.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75/compare?from=1207&to=1298>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8:18:04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5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u>대학교육, 학술연구에 기여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u> (신설 2022-01-17) 6.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7조(의무)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7조(의무) ①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강의 및 실습(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지원 해야 한다. <u>단, 강의 배정은 최대 6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1-17></u> ② 대학(원) 또는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강의, 세미나, 학생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지도를 해야 한다. ③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수와 공동연구를 통해 논문 1편/년 이상을 전문학술지에 발표(게재)해야 한다. ④ 특임교수는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및 기타 학과업무에 관한 자문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대학교육, 학술연구에 기여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6.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37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단, 강의 배정은 최대 6학점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1-17>"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